

법령코너

기술표준원고시 제2009-0476호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09년 8월 26일
기술표준원장

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고시

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강제적용 안전기준 [별표1]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4조 참고적용 안전기준[별표2]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험항목추가 등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고시의 K60968, K61347-2-10의 개정내용은 201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.

붙임 : 주요내용

1. 제 · 개정취지

09년부터 자율안전확인제도 시행, 신기술적용 제품의 사용 증가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의 환경이 다양화하였기에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K60432-2(백열전구(텅스텐전구) - 안전 제2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명기기용 텅스텐 할로젠전구) 등 4종의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K60968(안정기 내장형램프 - 안전요구사항) 등 3종의 안전기준을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1)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432-2(백열전구(텅스텐전구)-안전 제2부: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명기

기용 텅스텐 할로젠전구)를 제정하여 추가

- 2)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0432-3(백열전구(텅스텐전구)-안전 제3부 : 텅스텐 할로젠전구(비차량용))을 제정하여 추가
- 3) [별표2]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62471-1(램프와 램프장치의 광생물학적 안전성)을 제정하여 추가
- 4)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1347-2-11(램프 구동장치 제2-11부 : 기타조명기구용 전자회로의 개별요구사항)를 제정하여 추가
- 5)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068(안정기 내장형램프-안전요구사항)의 4.2에 LED램프는 시각보호를 위한 기준을 참조하도록 하였으며 5.3램프 캡의 종류에 G7, GU10, GZ10, GX53을 추가하여 국제기준에 맞도록 변경하는 등 안전기준을 개정
- 6)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598-2-5(등기구 제2-5부 : 투광조명기구 - 개별요구사항)의 오·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
- 7)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1347-2-10(램프 구동장치 제2-10부 : 고주파 냉음극방전관(네온관)용 전자식인버터 및 컨버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)1. 적용범위에 냉음극 방전램프의 출력범위를 10,000V에서 15,000V로 확대하였으며 3.2 정격부부하 전압에서 무부하 전압 측정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